



# 익산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홍보담당관

선 람	기 관 의 장

## 【 훈 령 】

- 익산시 훈령 제2011-344호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 입법예고 】

- 익산시 공고 제2011-984호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6
- 익산시 공고 제2011-986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2

회 람								
--------	--	--	--	--	--	--	--	--

익산시 훈령 제 344 호

익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1년 6월 3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 익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익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규정”을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3항중 “종목별 감독1인과 코치 1인씩”을 “육상부는 감독 1인과 코치 1인, 펜싱부는 감독 1인과 분야별로 코치 1인씩”으로 한다.

제9조1호중 “본봉과 년400퍼센트의 상여금” 을 “기본급” 으로 한다.

제9조3호중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 를 “매년 1월 1일자” 로 한다.

별표1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조건의 지도자 란 중 코치 경력 “국가대표로 3년이상 경기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를 “A급 코치 1. 국가대표로 3년이상 경기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2. 우리시에서 B급 코치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B급 코치 1. 국가대표로 1년이상 경기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로 한다.

별표2 초임호봉 산정기준 중 코치 란의 “일반직6급8호봉기준”을 “A급 코치 는 일반직6급8호봉기준, B급 코치는 일반직7급10호봉기준”으로 한다.

별표7 포상금 지급기준 제2항 표 하단의 본문 “메달 획득할 때마다 다음해 1년간 매월 가산금을 지급한다.”를 “전년도에 메달을 획득한 기존 선수와 신규입단 선수에게 1년간 매월 가산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서식]

##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재) 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또는 운동선수는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 1. 당사자

#### 가. 사용자

- 1) 사용자 : 익산시청
- 2) 사업장 : 익 산 시
- 3)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 나. 지도자(선수)

- 1) 성           명 :
- 2) 주민등록번호 :
- 3) 주           소 :

### 2. 계약조건

가. 취업장소 :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나. 종    목 :

다. 등    급 :    등급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제11조적용]

라. 기타 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조건, 수당등은 익산시 예산편성지침 및 익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 3. 입단계약기간 : 20 . . . 일 부터 20 . . . 일 까지 [1년간]

위와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당사자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 . . . .

사 용 자 : 익 산 시 청  
 지도자(선 수) :  
 입 회 인 :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구성)①~②(생략) ③종목별 감독1인과 코치 1인씩을 둘 수 있다			제3조(구성)①~②(현행과 같음) ③육상부는 감독 1인과 코치 1인을, 펜싱부는 감독 1인과 분야별로 코치 1인씩을 -----.		
제9조(보수) 1. 지도자와 선수의 보수는 본봉과 년4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2.(생략) 3. 지도자와 선수의 초임호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호봉은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하며,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4.~5.(생략)			제9조(보수) 1. ----- 기본급을 ----- -----. 2.(현행과 같음) 3. ----- ----- 매년 1월 1일자로 -----. 4.~5.(현행과 같음)		
<p><b>별표 1</b></p> <p><b>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조건</b> (제4조제1항관련)</p>			<p><b>별표 1</b></p> <p><b>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조건</b> (제4조제1항관련)</p>		
구분	학 력	경 력	구분	학 력	경 력
지도자	1. 대졸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는자 2.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1) 감독 : 국가대표로 3년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1급 소지자 (2) 코치 : 국가대표로 3년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지도자	1. ----- ----- ----- 2. ----- -----	(1) 감독 : ----- (2) A급 코치 (가) 국가대표로 3년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나) 우리시에서 B급코치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3) B급 코치 (가) 국가대표로 1년이상 경기 경력이 있는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선수	1. 고졸이상	선수경력 3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이내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	선수	1. -----	-----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표 2 <b>초임호봉 산정기준</b>(제9조제3항 및 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등급별 초임 호봉</th> <th rowspan="2">감독</th> <th rowspan="2">코 치</th> <th colspan="4">선 수</th> </tr> <tr> <th>A급</th> <th>B급</th> <th>C급</th> <th>D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 준</td> <td>일반직</td> <td>일반직</td> <td>일반직</td> <td>일반직</td> <td>일반직</td> <td>일반직</td> </tr> <tr>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7급</td> <td>8급</td> <td>9급</td> </tr> <tr> <td>4호봉 기준</td> <td>8호봉 기준</td> <td>10호봉 기준</td> <td>5호봉 기준</td> <td>1호봉 기준</td> <td>1호봉 기준</td> </tr> </tbody> </table>		등급별 초임 호봉	감독	코 치	선 수				A급	B급	C급	D급	기 준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5급	6급	7급	7급	8급	9급	4호봉 기준	8호봉 기준	10호봉 기준	5호봉 기준	1호봉 기준	1호봉 기준	<p>별표 2 <b>초임호봉 산정기준</b>(제9조제3항 및 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등급별 초임 호봉</th> <th rowspan="2">감독</th> <th colspan="2">코 치</th> <th colspan="4">선 수</th> </tr> <tr> <th>A급</th> <th>B급</th> <th>A급</th> <th>B급</th> <th>C급</th> <th>D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 준</td> <td rowspan="3">----</td> <td>일반직</td> <td>일반직</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td> <td>7급</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호봉 기준</td> <td>10호봉 기준</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등급별 초임 호봉	감독	코 치		선 수				A급	B급	A급	B급	C급	D급	기 준	----	일반직	일반직					6급	7급					8호봉 기준	10호봉 기준				
등급별 초임 호봉	감독				코 치	선 수																																																													
		A급	B급	C급		D급																																																													
기 준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일반직																																																													
	5급	6급	7급	7급	8급	9급																																																													
	4호봉 기준	8호봉 기준	10호봉 기준	5호봉 기준	1호봉 기준	1호봉 기준																																																													
등급별 초임 호봉	감독	코 치		선 수																																																															
		A급	B급	A급	B급	C급	D급																																																												
기 준	----	일반직	일반직																																																																
		6급	7급																																																																
		8호봉 기준	10호봉 기준																																																																
<p>별표 7 <b>포상금 지급 기준</b> (제13조 관련) 2. 메달 가산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메 달</th> <th>금</th> <th>은</th> <th>동</th> </tr> <tr> <th>(마라톤 1~2위)</th> <th>(마라톤 3~4위)</th> <th>(마라톤 5~6위)</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td> <td>1,500</td> <td>1,000</td> <td>800</td> </tr> <tr> <td>나.</td> <td>아시안게임</td> <td>600</td> <td>550</td> <td>500</td> </tr> <tr> <td>다.</td> <td>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마라톤대회</td> <td>400</td> <td>250</td> <td>200</td> </tr> </tbody> </table>		구 분	메 달	금	은	동	(마라톤 1~2위)	(마라톤 3~4위)	(마라톤 5~6위)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1,500	1,000	800	나.	아시안게임	600	550	500	다.	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마라톤대회	400	250	200	<p>별표 7 <b>포상금 지급 기준</b> (제13조 관련) 2. 메달 가산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메 달</th> <th>금</th> <th>은</th> <th>동</th> </tr> <tr> <th>(마라톤 1~2위)</th> <th>(마라톤 3~4위)</th> <th>(마라톤 5~6위)</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나.</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메 달	금	은	동	(마라톤 1~2위)	(마라톤 3~4위)	(마라톤 5~6위)	가.	-----	-----	-----	-----	나.	-	-----	-----	-----	다.	----	-----	-----	-----																		
구 분	메 달			금	은	동																																																													
		(마라톤 1~2위)	(마라톤 3~4위)	(마라톤 5~6위)																																																															
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1,500	1,000	800																																																															
나.	아시안게임	600	550	500																																																															
다.	아시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마라톤대회	400	250	200																																																															
구 분	메 달	금	은	동																																																															
		(마라톤 1~2위)	(마라톤 3~4위)	(마라톤 5~6위)																																																															
가.	-----	-----	-----	-----																																																															
나.	-	-----	-----	-----																																																															
다.	----	-----	-----	-----																																																															
<p>주) 메달획득할 때마다 다음해 1년간 매월 가 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국체전 및 전국마라 톤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선수자 격으로 출전하는 자에 한하며, 지도자의 메달 가산금은 소속선수의 최고 수혜종목 하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p>		<p>주) 전년도에 메달을 획득한 기존 선수 및 신규 입단 선수에게 1년간 매월 가산금을 지급한다. ----- ----- ----- -----.</p>																																																																	



익산시 공고 제 2011-984 호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익 산 시 장

##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011. 5. 23)으로 공무원의 구분(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공무원의 구분(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근무상한연령, 면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18, FAX 063-859-50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063-859-5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1999. 01. 12, 조례 제457호)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고 제 2011-986 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익 산 시 장

##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홍보관리요원의 임용자격기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예산편성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홍보관리요원의 임용자격기준 미비점 보완(안 제3조 별표)

- 1)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예산편성관리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3조 별표)

###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18, FAX 063-859-50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063-859-5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홍보관리요원의 임용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홍보관리요원란 다음에 예산편성관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 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홍보관리 요원	6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li> <li>○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li> </ul> </li> <li>○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7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li> </ul> </li> <li>○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예산편성 관 리 원	8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li> </ul> </li> <li>○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9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li> <li>○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별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 계급	임용자격기준	직무구분 및 직위	상당 계급	임용자격기준
의 전문위원	5급	(생략)	의 전문위원	---	(현행과 같음)
보 진 료 원	6급	(생략)	보 진 료 원	---	(현행과 같음)
	7급	(생략)		---	(현행과 같음)
나 관 리 원	7급	(생략)	나 관 리 원	---	(현행과 같음)
화 생 방 원	7급	(생략)	화 생 방 원	---	(현행과 같음)
보건위생 감시원	7급	(생략)	보건위생 감시원	---	(현행과 같음)
농 기 계 교육교관	6급	(생략)	농 기 계 교육교관	---	(현행과 같음)
	7급	(생략)		---	(현행과 같음)
정 원 관 리 요 원	6급	(생략)	정 원 관 리 요 원	---	(현행과 같음)
	7급	(생략)		---	(현행과 같음)
문 화 재 관 리 전 문 요 원	6급	(생략)	문 화 재 관 리 전 문 요 원	---	(현행과 같음)
	7급	(생략)		---	(현행과 같음)
홍 보 관 리 요 원	6급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홍 보 관 리 요 원	---	○ ----- ----- ----- ----- ○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법학, 정치학, 언론홍보학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 설>			예 산 편 성 관 리 원	8급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급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